

# 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에 관한 고찰

곽진오\*

(e-mail: ojkwak@nahf.or.kr)

---

## 목 차

---

1. 서론
  2. 무주지선점 이전의 독도인식
  3. 무주지선점 이후의 독도인식
  4. 결론
- 

## 1. 서론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독도(獨島)에 대해 본격적으로 야심을 나타낸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에 대비해서였다.<sup>1)</sup> 그리고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무주지라는 근거를 만들어 독도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행하게 된다.<sup>2)</sup> 이 독도무주지선점론은 전후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 1) 독도명칭의 문헌에 최초등장은 1904년 일본군함 니다카호(新高号)의 일지에 ‘조선인들은 리양코를 독도라 부른다’로 기록되어있으며, 한국 문헌에는 1906년 황성신문이다. 이 논문에서 독도는 한국에서 부르는 용어이고 죽도(竹島,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부르는 용어로 설정해둔다. 그리고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착되기 이전이기에 편의상 조선, 대한제국, 한국을 병행해서 사용했다.
- 2) 저자가 조사한 결과 우리가 말하는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통상 우리가 부르는 시마네 현 고시는 단지 시마네현官吏 몇 명만이 돌려본 회람문서로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현재 “시마네현 도서관 소장 ‘시마네현보’의 정식명칭은 ‘시마네현령’ 또는 ‘시마네훈령’이며 ‘시마네현보’로 바뀐 것은 다이쇼(大正)5년 즉 1916년 4월부터였으며 따라서 ‘시마네현령’ 또는 ‘시마네훈령’이었을 1905년 당시의 ‘시마네현고

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더 나아가서 독도무주지선점론은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국제법적인 근거로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이 독도무주지선점론을 주장했던 시기는 이보다도 27년 앞선 1878년에 타나베 타이치(田邊太一)라는 당시 공신국장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독도에 대해 무주지임을 밝힐 근거가 없었기에 일본영토편입을 포기했다가 러일전쟁으로 인해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본영토로 편입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은 독도에 대해 ‘독도고유영토설(獨島固有領土說)’을 주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독도는 원래 일본영토였는데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는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최근에 만들어진 논리로써 그 시작은 1953년 7월 13일자와 1954년 2월 10일자의 두 번에 걸쳐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보내온 구상서에 나타나있다.<sup>3)</sup>

한편 일본외무성이 2008년 2월부터 외무성 독도관련 홈페이지에 독도가 무주지 이었다는 주장내용을 볼 것 같으면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석도(石島)가 오늘날의 다케시마(竹島)라면 왜 칙령에 독도(獨島)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 하면서 마치 독도명칭관련 문헌이 발견되면 한국영토로 인정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 조치는 대한제국정부가 서울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 칙령의 내용이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독도는 무인도이었을지는 몰라도 무주지가 아니었다. 왜냐면 이는 조선이 오래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섬을 비워두며 관리하였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동경에 있

시’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홍교문화사, 수원. 2000.8) pp. 778~79.

3) "The Takeshima has always been a part of Japanese territory throughout its long history." / "That Takeshima has been known to the Japanese since ancient times." 獨島關係資料集(I)-往復外交文書(1952~76) p. 13. / p. 43. 광진오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3권(2012.4) 한일군사문화학회, p. 15. 재인용.

4) 그러면서 일본은 다음 항에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만일 이 의문이 해소 된다 하더라도 이 칙령을 전후해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는 외국공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1876년에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 동경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sup>5)</sup>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에 의한 독도무주지선점론과 독도고유영토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한일양국학자들의 독도관련 입장 차이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일본의 독도무지선점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도가 고대로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는데 일본이 20세기 초 러일전쟁을 전후로 독도가 무주지임을 내세워 자국영토로 몰래 편입 시켰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을 두둔하는 학자들은 당시 국제정세로 보았을 때 독도무주지선점은 국제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7)</sup> 한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어느 학자군도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일양국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 논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이 학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독도무주지선점주장 이전과 이후 일본인들의 獨島觀에 대한 분석을 통한 후속연구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4개의 장으로 분석되어지는데 첫째, 서론, 둘째, 독도무주지선점 이전의 독도인식, 셋째, 독도무주지선점 이후의 독도인식, 넷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무주지선점 이전의 독도인식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죽도(竹島, 獨島의 일본식 명칭)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국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교수가 지적하듯이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설은 일본의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sup>8)</sup>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아래 10포인트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일본정부는 1905년,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죽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sup>9)</sup>를 분석하기로 한다.

5) 광진오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3편(2012.4) 한일군사문화학회, p. 152.

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신용하(1996), 이종학(2000), 송병기(1999·2004), 나이토세이추·김병렬(2007), 나이토세이추·박병섭(2007), 나이토 세이추(2008), 최장근(2008·2010)등이 있다.

7) 이케우치 사토시(2012), 시모조 마사오(2006).

8) 나이토는 외무성 독도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독도 팸플릿에 대해 “외무성이 만든 죽도에 대한 팸플릿은 내용이 없는 극히 터무니없는 간행물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内藤正中. 2008. 『竹島=獨島問題入門』日本外務省『竹島』批判, 新幹社. pp. 11~12.

### 「竹島 -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8.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 합니다.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sup>10)</sup>

그렇다면 일본이 1905년 2월 22일부터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던 근거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sup>11)</sup>의 독도관련 어업경영에 대한 일본정부에 竹島貸下願 문서이다. 이문서는 나카이가 독도에 강치잡이 어업을 하기위해 일본정부의 힘을 빌려 조선으로부터 독도를 빌리기 위한 문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 문서를 곡해해서 마치 이문서가 일본인이 독도를 경영했기 때문에 일본영토로 했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의 결정을 하고 죽도를 일본 소속으로 하여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다. “별지 내 무대신이 청한 안건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으며, 지난 1903년(메이지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자가 漁翁을 짓고 인부를 데려가서 獵具(獵具)를 갖추어 강치 잡이에 착수하였다.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어를 청원한 바, 이때 소속 및 섬의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섬을 다케시마라 이름붙이고, 이제부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려는 데

9)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10)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11) 1903년 독도어업을 했으며, 돛토리현 토하쿠(東伯)군 오가모(小鴨)촌 출신, 시마네현 스키(周吉)군 니시고초(西郷町)로 이주, 잠수어업이나 건착망어업을 했으며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해 대표가 되었다. 당시에는 오키의 周吉郡 西郷町에 거주하고 있었다.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해 밝혀지고 국제법상 점령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다고 사료되어 요청한 바와 같이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sup>12)</sup> 이 각의결정에 기초하여 내무대신은 시마네현 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훈령하였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섬)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지금부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이 내용을 관내에 알리기 바란다.”<sup>13)</sup> 훈령에 의한 시마네현 지사는 메이지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섬)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sup>14)</sup> 그리고 일본정부는 같은 날 시마네현은 오키도청에 다음과 같이 지령하였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섬)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졌으니, 이런 내용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sup>15)</sup> 일본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편입조치에 의해 근대국가로서 죽도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후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까지 독도에 대해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리가 일본정부의 정식 허가를 얻어 독도에 어사를 짓고 인부를 데려가 강치 잡이 경영에 착수하는 등 ‘실효적인 경영’을 해 온 것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권이 확립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편입조치는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점, 더구나 다른 나라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비밀리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그렇다면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기 이전 일본인 어부 나카이와 그 이외 일본 관리들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의 결정 내용 속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나카이는 독도가 일본령에 편입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 기술한 사료를 남겨 놓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료에 근거하여 독도가 어떻게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나카이가 독도가 어느

12)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 212-13.

13) 상계서, p. 213.

14) 상계서. p. 213.

15) 상계서, p. 214.

16) 1953年 7月 13日付「竹島に関する日本政府の見解」. 塚本孝「竹島領土権をめぐる日韓両国政府の見解」『レファレンス』平成14年6月号 (以下, 塚本 『レファレンス』として引用), p. 60.

나라 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기록은 상당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타무라(田村清三郎)의 글을 보면, “나카이가 1903년 독도에 나가 강치잡이업을 시작하면서 독도에 자본을 투자하여 막사를 짓고 어부를 데려와.....그래서 나카이는 경쟁자를 배제하고 사업을 독점하려고 획책하여 1904(메이지 37)년 9월 29일에 상경하여 섬 전제의 貸下願을 신청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sup>17)</sup> 이 과정을 보면 나카이는 먼저 오키시마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원에 연줄을 대어 마키 나오마사(牧朴真)<sup>18)</sup> 수산국장을 만나러 갔다. 나카이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키 수산국장이 해군수로부에 확인한 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카이 자신이 해군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sup>19)</sup>를 면회하고 우선 소속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기모츠키에게 본섬은 ‘무소속’이라는 대답을 얻었다. 이에 이르러 나카이는 뜻을 결정하고 「리양코섬, 독도의 다른 이름」의 영토편입 및 대여 要請願을 내무·외무·농상무 3대신에게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1910년에 나카이 자신이 기록한 ‘사업경영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 섬이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영토라는 생각이 들어 장차 통감부에 가야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상경해서 여러 가지 획책하던 중에 당시의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씨의 주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알아본 후 당시의 수로국장 기모츠키 장군에 의뢰한 바 이 섬은 전적으로 무소속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이 섬을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고 또 대여해 줄 것을 내무, 외무, 농상무 세 대신에게 청원하고 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sup>20)</sup> 또한 1906년(메이지 39)년 3월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울릉도 조사에 참가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sup>21)</sup>이 동행한 나카이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1907년에 간행한 『竹島及鬱

17)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52項 植田康雄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業』 第54巻 第1号, 33項.

18) 독도편입 조치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마키 나오마사(牧朴真)는 오랫동안 농상무성 수산국장으로 정채해 있던 일본의 어업을 도해어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는 일관하여 해군수로부에 재직했으며 일본수로행정을 확립시킨 관료였다. 러일전쟁 때에는 수로부장으로 조선·만주연해에서 군략수행을 위한 작업에 몰두했다.

20) 内藤正中·金病烈. 2007. 『竹島・独島=史的檢証』 岩波書店. p. 84. 그러나 나카이의 청원서는 내무성에 접수되지 못하고 각하(却下)된다. 그 이유는 나카이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영토라는 의심이 있는 황막한 일개 불모 암초를 거두어들여, 우리를 둘러싼 여러 외국에, 우리나라가 한국을 병합할 야심이 있다는 의혹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익이 극히 작은 데 반하여, 사태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광진오 『한일군사문화연구』 13편, (2012.4) p. 159. 재인용.

21)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본명은 오쿠하라 후쿠이치(奥原福市), 헤키운(碧雲)은 호명. 187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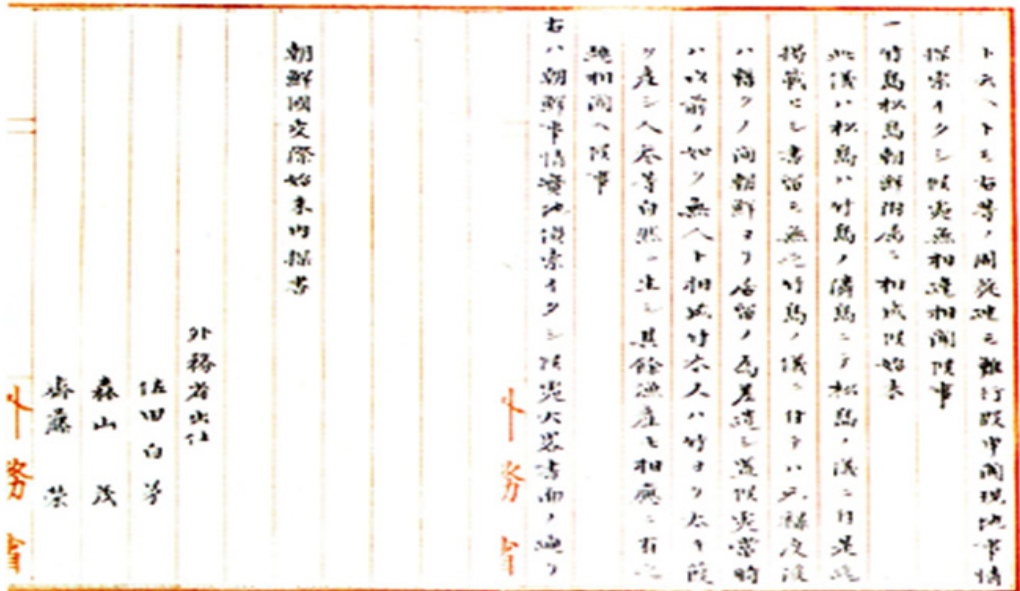
『陵島』에도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리양코섬을 조선의 영토로 확신하여……리양코섬 영토편입과 대여 요청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제출하였다.”<sup>22)</sup> 제출된 영토편입 및 대여 요청원에 의하면 강제 잡이의 전도는 유망한데, ‘이 섬은 영토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훗날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섬의 경영에 물자와 힘을 쏟아 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영토의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강제 포획에 반드시 경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커다란 위험이 생겨서 끝을 온전하게 하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아무쪼록 빨리 이 섬을 우리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저에게 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sup>23)</sup> 이처럼 나카이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은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키는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의 각주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내무성 관리에 의해 나카이가 제출한 독도사업경영개요 각하가 왜 일어났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메이지정부 출범이후 두 개의 문서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첫째, 1870년에 일본 메이지정부에서 발행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와, 둘째, 1877년 역시 메이지정부 발행의 태정관(太政官) 문서가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위의 문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1868년 메이지신정부는 조선과의 관계에서 竹島(당시 울릉도), 松島(당시 독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메이지정부 탄생 2년이 지난 1870년, 일본은 주변국과의 國境畫定의 일환으로 주변국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1870년 4월, 외무성관리 사다 하쿠가(佐田白茅)등 3명이 조선에 파견되어 죽도와 송도에 관해 한국의 입장을 알아본 뒤 일본에 귀국해서 정리해 외무성에 보고한 복명보고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인데 여기에는 「죽도·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竹島松島朝鮮付屬に相成候始末)」라는 항목 속에서 「송도는 죽도의 옆에 있는 섬이고, 송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사료는 특별히 없다. 그리고 죽도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5년간 이후, 잠시 동안은 조선에 의해 거류민을 파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무주지 선점논리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메이지6년)시마네현 야쓰카군 오카모토무라(현, 시마네현 마쓰에시 오카모토초)에서 태어났음, 교육자이면서 地方史를 연구했던 학자, 1935년(쇼와 10년)사망.

22) 奥原碧雲 『竹島及嶺島』(ハーベス出版), p. 55.

23) 상계서,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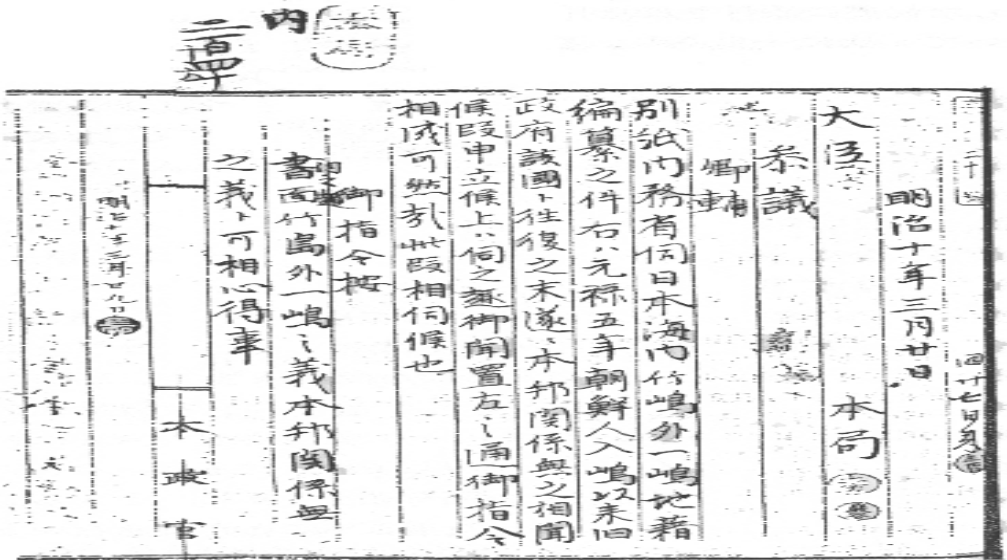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들째, 그리고 또 다른 문서로는 태정관(太政官)의 정원지지과(正院地誌課)에 의한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sup>24)</sup>(1875년)에서는 오키(隱岐) 부분에서 「오키의 작은 섬」의 합계 179개를 「혼슈(本州)의 부속섬」으로 한 뒤에, 그 이외에 송도, 죽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 섬이 「혼슈의 부속섬」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sup>25)</sup>

24) 메이지 정부가 편찬한 최초의 관찬지지. 1872~73(메이지 5~6)년에 쓰카모토 야키다케(塚本明毅)에 의해 편술되어, 간행에 즈음해서는 원고를 각 府縣에 내려 보내 교정을 시키고, 교열을 더했다. 1874년 간행개시, 1879년 완결. 후사국(総国), 이경(東京/京都), 오기칠도(五畿七道), 류큐(琉球), 홋카이도 외(北海道の他), 가라후토(樺太, 지금의 사할린)등이 표기되어있다.

25) 이 외에도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중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표기한 일본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초기에 만들어진 자료들로는, "1880년에 내무성이 작성한 「대일본국전도(大日本国全図)」, 1881년의 「대일본부현분할도(大日本府県分轄図)」에는 죽도, 송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제국육군 참모국에 의한 「대일본국전도(大日本国全図)」(1877년)에도 죽도, 송도의 기재는 없으며, 제국육군 육지측량부의 「집제이십만분일도일람표(輯制二十万分之一圖一覽表)」(1885년)에서는 죽도는 기재되어 있지만 점선표시이고, 섬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국해군 수로부(水路部)에 의한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1883년)에서는 송도는 리양쿠르 열암(列岩)으로서 「조선의 동해안 및 여러 섬(朝鮮東岸及諸島)」안에 기재되었다. 그리고 메이지 후기에 만들어진 자료들로는, 쿠즈우 슈스케(葛生修亮)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년), 이와나가 시게카(岩永重華)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1904년),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1905년)등 이 있다." 광진 오 『한일군사문화연구』 13권, (2012.4) p. 167. 재인용.



明治10(1877)年3月29日太政官指令書(国立公文書館蔵)

그리고 지적편찬사업(地籍編纂事業)중에 시마네현에서 「일본해 내의 죽도와 그 외 일도의 지적 편찬 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가 제출된 때, 죽도와 함께 「그 외 일도(外一島)」인 송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관계 없는 건(本邦關係これなき儀)」이라고, 1877년 3월 29일에 태정관은 결정했다.

태정관은 당시의 일본정부 최고기관이고, 그곳에서의 의사결정은 중요하다. 이 때 「외일도(外一島)」라고 기록된 송도(현 죽도)에 대해서는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지시의뢰서(伺書)에 첨부된 「유래의 개략(由来の概略)」속에 죽도의 설명에 이어 「다음으로 한 섬이 있다. 송도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그 주위가 30정(町)이고, 죽도와 같은 항로에 있고, 오키로부터는 80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섬이며, 수목이나 대나무는 거의 없지만, 어수(魚獸)가 많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図)」에는 기죽도(죽도)와 함께 송도가 기재되어 있다.<sup>26)</sup> 이처럼 1905년 2월 22일 이전의 일본인들이 생각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였음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26) 内藤正中, 2008. 『竹島=独島問題入門』日本外務省『竹島』批判, 新幹社. p. 40.

### 3. 무주지선점 이후의 독도인식

일본에 의한 독도무주지 선점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전략차원과, 둘째, 당시 일본의 역사인식부족을 들 수 있겠다. 위에서도 나카이의 독도어업권 貸下願과정에서도 언급된바 있지만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할 당시 러일전쟁중임을 알 수 있다. 그때 나카이가 농무성과 수로부 관리를 만나고 난 뒤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확신하고 내무성에 가서 독도 대외 요청을 하자 내무성관리는 나카이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카이가 거절당한 이유에 대해 그는 사업경영개요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에 의하면 “내무성 당국자는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의 영토일지 모르는 황량한 일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여러 외국에게 우리가 한국병합의 야심이 있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이익은 극히 작은데 반하여 실행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아무리 사정을 말하여도 출원은 각하시키려고 하였다.”<sup>27)</sup> 내무성에서 독도어업권 貸下願이 거절당하자 나카이는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되므로’ 외무성으로 달려 가 당시의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sup>28)</sup>와 논의하였다. 야마자는 ‘시국이야말로 영토편입을 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겠는가. 특히 외교상 내무와 같은 고려는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속히 원서를 본성에 회부케 해야 한다는 의기가 고조되어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의심이 가는 대목은 나카이의 독도어업권 貸下願을 반대했던 내무성관리의 표현인 ‘이 시국에 즈음하여’와 찬성했던 외무성관리의 ‘시국이야말로 영토편입을 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일본 관리들이 말했던 ‘시국’이란 개념은 전자와 후자 모두 당시의 국제정세를 말하고 있다. 이는 일련의 영토편입 조치와 ‘시국’과의 관련성이 쟁점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과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자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복하여 일본회하에 두자는 여론이 급성장하게 된다. 특히 이전 총리였던 야마가타 아리도모(山県有朋)이후 그의 의견서 ‘외교정략론’에서 일본의 독립과 자위를 위해서는 주권선(主權線)의 방어와 함께 이익선(利益線)의 防護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이것이 일본국내에서는 유명한 주권선과 이익선 이론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선이란, “아방(我邦)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로 집약되었다.<sup>29)</sup> 이후 일

27)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pp. 212-13.

28)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는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서울의 일본공사관에서 일한 적도 있는 조선 통이다. 성내의 코무라 주타로(小村寿太郎)와 견줄만한 대외 강경·대륙진출정책의 추진자로 알려져 조선에 주재했을 때는 일본의 이권획득을 위한 계책에 분주했던 인물이었다.

본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조선을 지배하여 두자는 의론이 강하게 일어나 일본이 한국을, 러시아가 만주를 「세력권」으로 하여 양자 균형을 꾀하자는 「滿韓交換論」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만주·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깊어갔고, 1903년 12월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의하고 ‘대러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일본이 취해야 할 대청한방침(對淸韓方針)’<sup>30)</sup>을 각의 결정하였다. 그리고 1904년 2월 6일 러일전쟁 발발, 2월 23일 일한의정서를 체결,<sup>31)</sup>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일한협약이 체결,<sup>32)</sup> 1905년 4월 8일 ‘한국보호권확립의 건’<sup>33)</sup>을 각의 결정하고 7월에는 가즈라·테프트 협약을 체결, 8월 제2차 일영동맹조약을 체결, 그리고 9월 미국주선으로 포츠머스조약 체결,<sup>34)</sup> 11월 17일 보호조약인 제2차 일한협약(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일본은 한국의교를 ‘감시지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련의 ‘시국’이란 단어가 존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의한 독도선점동기는 독도가 무주지이었거나 일본의 고유영토여서가 아니라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한국의 무인도에 대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한 편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학자는 이러한 편입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들의 주요한 논리는 당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면 왜 타국(일본)으로의 편입에 대해 항의 하지 않았느냐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는 1905년 2월을 시점으로 1년여 전에 한국은 한일의정서를 체결당해 군사적으로 일본에 의해 압도당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이 부재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일본이 독도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9) 가토요코 지음 박영준 옮김. 근대일본의 전쟁논리 : 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태학사, 2002), pp. 83-84.

30) 대청한방침(對淸韓方針)이란, 러일전쟁시 청나라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교전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본의 권력 아래에 두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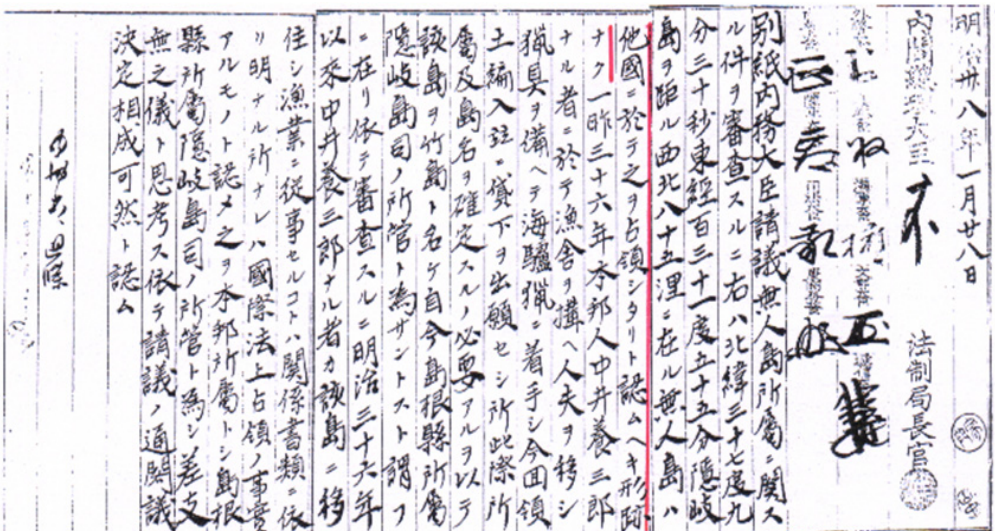
31) 이는 일본에 의한 한국방위무를 규정하는 한편,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인지시키는 조약이었다.

32)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자를 한국 정부가 재정·외교고문에 임명하고 그 후 외교안건은 일본과의 협의를 요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같은 해 11월 해군사령부 군함 쓰시마(對馬)호에게 죽도가 전신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시찰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시 말해 울릉도와 해저전신선으로 연락할 망루건설의 가부를 조사한 것이다. 쓰시마호 함장은 지형적으로 곤란하지만 동도라면 건축물 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33) 이때 일본 정부는 ‘원래 한국의 외정은 동양의 화근이 잠재적인 곳이어서 장차 분규제발 발단을 끊고 제국의 자위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제국은 반드시 지금 이 때에 한발 나아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고 한국의 대외관계를 우리 손으로 장악해야 한다’고 하는 각의 결정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열강으로부터의 양해를 얻으려고 하였다.

34) 이 조약의 2조에는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대해 행정, 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제국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시 조치를 집행하는 한편 이것을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당시 영토편입에 대해서 2008년 외무성 팜플렛은 「각의(閣議) 결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죽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 하였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영토편입 전례를 볼 것 같으면, 1876년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일본에 귀속시킬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열강에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1879년 오키나와(沖繩)가 일본에 편입될 당시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쳐 주변국들과 영토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독도를 일명 시마네현 고시40호에 게재할 때는 외국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1905년 1월 28일의 각의결정 하에서만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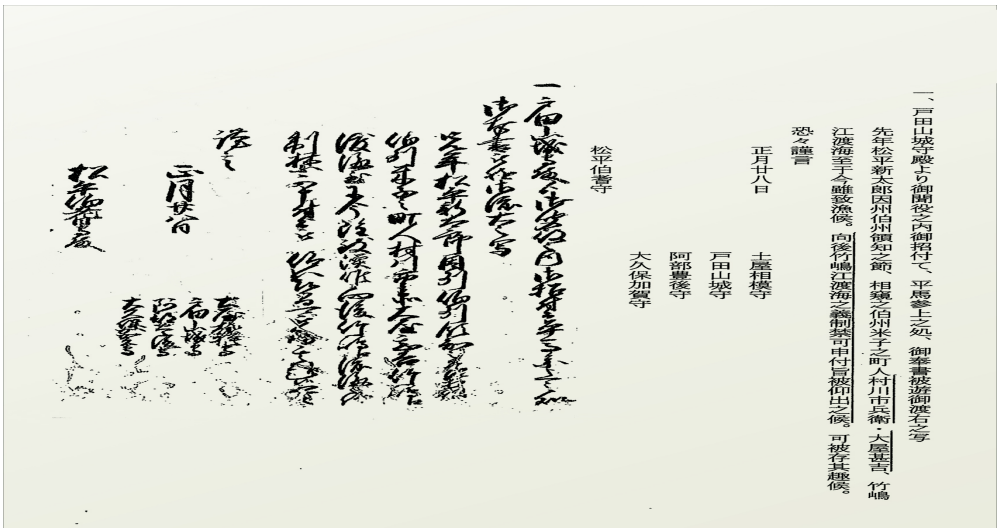
明治38(1905)年1月28日閣議決定(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蔵, 붉은색표시는 저자강조)

또한 외무성 팜플렛 6번은 상기의 내용만을 가지고 ‘국제법상의 점령 사실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기에,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였으며, 무주지선점의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외무성의 이러한 주장은 1910년 나카이가 쓴 리앙코 섬에서의 강치잡이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속에서 “본섬은 울릉도에 부속되어 한국이 영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장차 통감부(統監府)에 대해서 할 바가 있을 것이라 하여 상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5)</sup> 이는 일본의 독도 무주지선점논리가 허구임을 대변해주고 있다.

두 번째, 일본의 역사인식부채를 들 수 있다. 먼저 1904년 죽도명칭부여에 관한 과정인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당시 일본정부는 독도에 새 이름을 붙이기 위해 시마네 현청에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1904년 11월 15일 시마네현 내무부장은 오키도사에게 새 섬의 소속에 대해 시

35) 内藤正中. 2008. 『竹島=獨島問題入門』日本外務省『竹島』批判, 新幹社. p. 41.

마네 현청의 소관으로 해도 좋을지, 또 새 섬의 이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상기 내용으로 짐작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당시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1696년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竹嶋渡海禁止令)’이 내려진 이후 약 200년 동안 일본인들의 독도출입이 금지되었기에 독도에 대한 위치파악이나 생태, 자연환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죽도(울릉도/독도)도해금지령(竹嶋渡海禁止令, 1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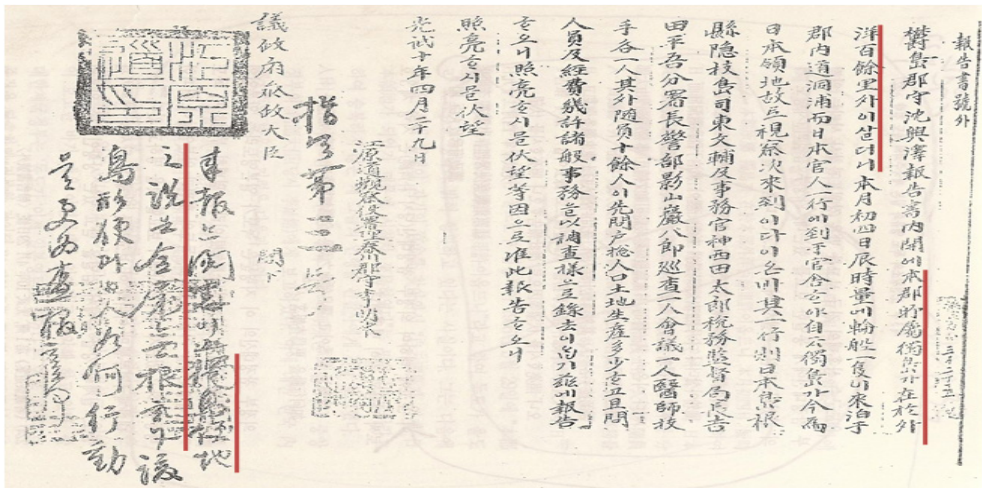
“상기 그림을 번역해 보면,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竹嶋渡海禁止令, 1696) (전략) 이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인슈(因州:因幡)와 하쿠슈(伯州:伯耆)를 다스리던 때 하쿠슈 요나고(米子)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 오야 진키치(大屋甚吉)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 왔지만 향후에는 죽도 도해 금지를 명하니 이를 명심하라.”<sup>36)</sup>

당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부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시마네현청의 질의에 대해 오키도사의 회답에서 알 수 있다. “이달 15일 서(庶) 제 1073호를 통해서 도서(섬)의 소속 등에 관하여 조회하신 취지를 잘 알았으며, 위는 우리 영토에 편입한 뒤 오키섬 소관으로 정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그 명칭은 다케시마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디 조선의 동쪽 해상에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 두 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 의해 구비 전승되어 온 바, 그리하여 종래 이곳 지방에서 나무꾼들이 왕래하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였지만, 그 실상은 마쓰시마이며 그것

36) 죽도(울릉도/독도)도해금지령(竹嶋渡海禁止令, 1696)

은 해도를 보더라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섬을 두고 달리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것도 없으며, 따라서 종래 잘못 불리온 명칭을 전용하여 다케시마의 통칭을 새 섬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회답하는 바입니다.”<sup>37)</sup> 시마네현은 이것을 상신하였고 상신을 기초로 내무대신의 추천을 거쳐 각의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05년 2월 22일 각의결정을 받아 시마네현은 고시40호로 리양쿠르섬이라고 명명하고 이 섬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라고 공시하였다. 한편 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다. 여기서 한국이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일본에 의한 통보가 아닌 우연한 사건에서 밝혀진다.

한편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죽도 도항일기」 『竹島及鬱陵島』에 의하면, 독도편입이 완료되고 1년 이상이 지난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은 진자이 유타로(神西由太郎)를 단장으로 하는 40여명의 조사단이 죽도를 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울릉도에 들러 울릉군위를 방문하였다.<sup>38)</sup> 이때 오쿠하라가 기술헌 놓은 「죽도 도항일기」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이들이 떠난 뒤 심홍택 울릉군수는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이번 진자이 일행의 울릉도 독도방문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에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제출한 「보고서호외」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를 전제하여 참정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와 그에 대한 참정대신의 지령문.(서울대 규장각 소장).<sup>39)</sup>

37) 内藤正中 「竹島の領土編入をめぐる諸問題」 『東北アジア文化研究 第24号、2006年』 p. 13.

38)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유미림. 한국어 번역본 『울릉도와 독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p. 131.

「우리 군 소속의 독도는 우리 군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100리 밖에 있지만 이번 달 4일 (음력 3월 4일) 오전 8시경 배 한척이 울릉도 도동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일본군관 일행이 관사에 와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하고 울릉도에 왔다고 하였다. …… (일행은) 먼저 호수와 인구수, 그리고 토지 생산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묻고, 이어 인원과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 일반 사무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떠났다.」 이명래의 보고를 받은 참정대신 박제순은 독도가 일본령이 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섬에 관한 사정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일본이 독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강원도 관찰사와 울릉군수가 이 건에 대해 다시 보고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또한 독도 일본편입은 무주지선점 보다는 주인이 있는 무인도에 대한 침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시국’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나카이가 독도에 대해 대하원을 제출하려 내무성에 갔을 때 내무성 당국자의 ‘시국’과 둘째, 야마자가 말한 ‘시국’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의 ‘시국’은 ‘한국의 영토일지 모르는 황량한 일개 불모의 암초(독도)를 취하여 여러 외국에게 우리가 한국병합의 야심이 있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이익은 극히 작은데 반하여 실행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하여 기각했다.<sup>40)</sup> 내무성의 이러한 ‘시국’ 인식은 아마도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중국으로부터 얻은 요동반도에 대한 3국 간섭의 학습효과였을 것이다.<sup>41)</sup> 그리고 후자의 야마자가 말한 ‘시국’은 러일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러시아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절박함이 비록 타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독도를 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한 ‘독도무주지선점논리’는 어떤 시국에 즈음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4. 결론

다시 말해서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론은 1904년 9월 어업가 나카이가 일본 정부를 통해 조선에 독도대하원을 청하려 하자 일본 관리들이 이를 이용하여

39) 울도군수 심홍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소속 독도가”라고 하여 독도가 자신의 통치지역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 영지 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본 주장에 항의하고 비판하고 있다.

40)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pp. 212-13.

41)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청국과의 사이에 강화조약을 조인·비준(批准)하였다. 그런데 조약 내용을 본 러시아·프랑스·독일 3국은 4월 23일 이 조약에서 일본에 할양하도록 되어 있는 라오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였다.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론은 현재 한일 간의 현안임과 동시에 외교 쟁점으로 비화되어가고 있다. 그간 일본의 독도주장에 대해 한국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일본에 의한 독도무주지선점논리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무주지선점논리는 ‘선점’에 의한 영역 권원의 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일본에 의한 독도무주지선점은 적어도 1905년 당시까지 일본이 독도를 그 영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일본 측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에 변경하여 이것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 고시40호는 한 지방정부에 의한 고시에 지나지 않고, 1905년 2월 22일 이후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단지 현소속의 몇몇 관리들에 의해 회람되었을 뿐 한국정부에 통지되지도 않았다. 또한 편입조치도 국내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여졌기에 외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국민조차도 이것을 몰랐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의사 공시라고 간주할 수 없다. 셋째,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영토를 어느 곳이든지 사용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 의한 독도무주지선점논리는 국제법적으로도 합당치 않다.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논리에 맞서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의 논리는, 이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금 부르는 독도가 왜 1900년 10월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지금의 이름인 독도가 아닌 ‘석도’로 기록되어있는가? 둘째, 1905년 당시 일본에 의한 독도편입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표시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게 1906년 3월말 진자이 일행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뒤 심홍택 울릉군수, 이명래 춘천군수 등이 1906년 4월 29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내용과 박제순의 하달조치내용을 종합해보면 독도가 무주지가 아닌 한국의 영토임이 극명하다. 그리고 1900년 당시, 한국은 대한제국이었고 죽도는 송도 혹은 리양코 섬 또는 양코 섬이었다. 이 당시, 한국진출의 가이드북으로서 일본인이 집필 간행한 저서에는 양코 섬을 한국 강원도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쿠즈우 슈스케(葛生修亮)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년), 이와나가 시게카(岩永重華)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1904년),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1905년)등이다. 독도를 양코 섬으로 부르고, 한국령의 섬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 『한해통어지침』에는 농상무성의 마키 수산국장이, 『최신한국실업지침』에는 외무성의 야마자 정무국장이 각각 서문을 쓰고 있다. 따라서 ‘영토

편입 및 대여 청원'을 제출한 나카이가 '리양코 섬을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이 영유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1906년 3월에 시마네현 관원 일행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울릉군수 심홍택이 그 일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한 문서 속에서 '본군소속독도(本郡所屬獨島)'라고 시마네현에 편입된 독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울릉군수 심홍택은 독도를 울릉군관할 하에 명확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04년 9월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일지를 쓴 시점에는 이미 한국인이 죽도를 독도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과 1904년 9월 29일에 나카이가 상경하여 섬 전체의 대하원을 농상공부에 신청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당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1910년에 나카이 자신이 기록한 「사업경영개요」를 보면 “이 섬이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영토라는 생각이 들어 장차 통감부에 가야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상경해서 여러 가지 획책하던 중에 당시의 수산국장 마키 씨의 주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국 령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알아본 후 당시의 수로국장 기모츠키 장군에 의뢰한 바 이 섬은 전적으로 무소속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이 섬을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고 또 대여해 줄 것을 내무, 외무, 농상부 세 대신에게 청원하고 원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였다.”<sup>42)</sup> 등을 보더라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논리는 모순에 불과하며 편입조치 및 그 후의 '일본인에 의한 독도경영'은 일본의 침략행위이며 국제법상의 '영토 지배권의 계속적 행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2)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 210.

## 【参考文献】

- 이종학(2000)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 흥교문화사
-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 신용하(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지식산업사
- (1999) 「독도영유권자료의 연구」 제2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 (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 곽진오(2012) 「시마네현(島根県)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3편, 한일군사문화학회 p. 159. 재인용
-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ハーベスト出版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 歴史資料から考える」新幹社
- 内藤正中・金炳烈(2007) 「竹島・独島=史的檢証」岩波書店
- 内藤正中 (2008) 「竹島=独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竹島批判」新幹社  
日本国会議事録 外務法務委員会連合審議會 1号
- 梶村秀樹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付・資料)」 『朝鮮研究』 一九七八年 九月号
- 外務省編(197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明治百年史叢書1」原書房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 毎日新聞社編(1952) 「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
- 水津満(1987) 「北方領土の鍵」謙光社
-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 下条正男(2006)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芸春秋
- 下条正男(2007) 「最終報告にあたって「竹島の日」条例から二年」,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 池内敏(2012) 「竹島／独島と石島の比定問題・再論」, 『テキストの解釈学』, 2012  
日本外交省編(1970) 『日本外交文書』第18卷.
- 塚本孝 「竹島領土権をめぐる日韓両国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 平成14年6月号(以下,  
塚本 『レファレンス』として引用), p. 60.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s of Japan's claim over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and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and analyzes why the claim is problematic. Furthermore, this paper points out the controversy of Japan's later claim based on inherent territory, after it faced limits regarding the former claim of acquired terra nullius. Japan's claim over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originat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when Japan secretly seized Dokdo after realizing that it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After facing limitations of its claim based on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Japan later referred to the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which was merely a rhetoric claim which closely resembled Korea's claim over Dokdo.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at Japan's claim over Dokdo by mixing two theories of acquired terra nullius and inherent territory is inconsistent.

キーワード : Dokdo,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Terra Nullius,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the Russo-Japanese War

투 고 : 2012. 5. 31  
1차 심사 : 2012. 6. 16  
2차 심사 : 2012. 7. 7